

가스관계법령 질의 및 회신

1.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 질의 및 회신

1. 중압관에서 분기하여 단독정압기를 이용,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에 가스공급 가능 여부

Q 오피스텔 신축현장 주변에 중압관만 있어 저압배관에서 가스공급이 곤란한 경우 도로상의 중압관에서 분기하여 단독정압기를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190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04. 3. 9 동문건설(주) 목동현장 대리인)

A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각 세대에 이르는 배관은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설은 지역정압기 또는 저압의 공급관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하다. 또한 귀사에서 건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으로부터 245m 부근에 저압의 공급관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공동주택(오피스텔 190세대)은 저압의 공급관 또는 지역정압기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04.3.18 안전공사 시설 610-30060]

2. 단독사용자용 정압기를 설치하여 오피스텔에 가스공급 가능 여부

Q 오피스텔 신축현장 500m 부근에 저압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간선도로를 통과하고 도로에 지장물이 많은 등 주변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 주변 중압관(1m 이내)에서 분기하여 단독사용자용 정압기를 설치하여 오피스텔(총 546세대, 동별 273세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04. 10. 1 경부건설(주)]

A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각 세대에 이르는 배관은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설은 지역정압기 또는 저압의 공급관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안전관리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04. 10.6 안전공사 시설 610-30332)

3.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법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Q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가스공급시설) 및 제6호(가스사용시설) 관련하여 법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② 지하 공급관 관련하여 주공급관, 지선배관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인지?[04.8.25 (주)대인안전환경개발/대일가스]

A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

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가 가스공급시설이며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주공급관과 지선배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다.(04. 9.6 안전공사 시설 610-30295)

4. 시공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승인한 사유

Q ① 단지내 아파트 9개동 중 8개동은 도시가스배관이 안전하게 시공되었으나, 203동만 시공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승인한 사유는?

② 가스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스길이가 3m를 초과하므로 설치하여 줄 것을 개선 요청함

A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가스공급시설에 한하여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대내 가스사용시설(가스호스 설치)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감리(검사)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②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귀 아파트의 가스공급사인 한진도시가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04. 10. 11 안전공사 시설 610-30346)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지 않고 책임감리를 받을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가능 여부

Q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는 무엇인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지 않고 책임감리를 받더라도 관련기관 통보시 가스공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04.1.7 이재인)

A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으로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스공급 및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04.1.17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6. 도시가스 감압밸브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 배관의 보온재 시공가능 여부

Q 도시가스 감압밸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을 보온재 시공(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것)하는 것이 가능한지?[04.9.1 동보공업(주)]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배관의 일부분을 보온재로 감싸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보온재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04.9.9 안전공사 시설 610-30302)

7.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자가 가스배관망 순찰업무 가능 여부

Q ① 주40시간 근무(토·공휴일격주근무)로 인한 가스배관망 순찰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가스배관망 순찰업무를 할 수 있는지?

② 안전점검원 선임자격에 부합된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가 가스배관망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04.7.30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호남사업소장)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가스배관순찰업무를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만이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가스배관순찰업무 가능자의 자격을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휴일 및 야간 등 근무시간 외의 배관순찰업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따르거나 자체 운영계획에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04. 8. 6 안전공사 시설 610-30273)

8. 구청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미필에 해당되는지

Q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후, 구청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미필에 해당하는지와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04.3.22 정명임]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후 일정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04. 3. 29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9. 대표자가 같은 동일번지 사업자의 가스사용시설에 건축물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여부

Q 대표자가 같은 동일 번지, 동일 사업자의 가스사용시설에 있어서 건축물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월사용예정량 4천m³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여러개 있더라도 동 가스사용시설이 같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경우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04. 8. 12 산업자원부 홈페이지)